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0. 12.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30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12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2000. 12. 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염 을 렬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나. 주요골자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00.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 정 예 산	증 (Δ) 감	비 교
총 계	186,849,936	180,252,150	6,597,786	
일 반 회 계	161,055,198	154,457,412	6,597,786	
특 별 회 계	25,794,738	25,794,738	0	
의료보호기금	4,685,943	4,685,943	0	
주 차 장	21,108,795	21,108,795	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2000년도 제2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25억 4,434만 8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544억 5,741만 2천원보다 65억 9,778만 6천원이 보통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내시됨에 따라 1,610억 5,51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 내시된 추경재원은 세출예산안에서 예비비에 편성되었음.

○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의료보호비로 1억원이 2000. 10. 10 간주처리되어 46억 8,59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유료화 추진사업으로 2000. 9. 27 간주처리된 1억 326만원이 포함된 211억 87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2000회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구민회관 건립 공사비 177억 1,823만 8천원과 시비 보조사업으로 2000. 11. 24 간주처리된 월드컵 시범화장실 건립비 2억 4천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00. 8. 17 간주처리된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비 7억 1,109만 2천원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간주처리된 신수동 91~112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은 명시이월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01회계년도에 사용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구민회관 건립공사비는 열악한 구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추가 편성함에 따라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 1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1. 제출사유

-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 2. 주요골자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별첨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00.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 경 예 산	증(△) 감	비 고
총 계	186,849,936	180,252,150	6,597,786	
일 반 회 계	161,055,198	154,457,412	6,597,786	
특 별 회 계	25,794,738	25,794,738	0	
의료보호기금	4,685,943	4,685,943	0	
주 차 장	21,108,795	21,108,795	0	

### 3. 제출서류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별첨

## 일반회계 간주처리

◎ 제 1 회 추경		151,913,064천원
㉸ 간주처리		2,544,348천원
○ 제 25 차 간주처리	( 2000. 08. 17 )	805,000천원
○ 제 26 차 간주처리	( 2000. 09. 27 )	127,426천원
○ 제 27 차 간주처리	( 2000. 10. 10 )	1,568,600천원
○ 제 29 차 간주처리	( 2000. 10. 21 )	43,322천원

계 154,457,412 천원

## 의료보호 특별회계 간주처리

◎ 본 예산 4,585,943천원

◎ 간주처리 100,000천원

○ 제 1 차 간주처리 ( 2000. 10. 10 ) 100,000천원

계 4,685,943 천원

## 주차장 특별회계 간주처리

◎ 제 1 회 추경 21,005,535천원

◎ 간 주 처 리 103,260천원

○ 제 3 차 간주처리 ( 2000. 09. 27 ) 103,260천원

계 21,108,795 천원

## 예 산 증 직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일 반 회 계	161,055,198 천원	4,831,656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685,943 천원	0
주 차 장 특별회계	21,108,795 천원	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다.

제4조 2000년도 지방채발행 없다.

제5조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2000년도 계속비 사업은 없다.

제7조 (예산이용)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1, 2, 4호 제외)

1. 공무원 봉급 (상여금 및 정액수당 등)
2. 공무원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 부담금
3.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4. 공공요금
5. 제세 공과금, 배상금
6. 차입금의 원리금
7.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9조 (간주처리)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세 입



## 일반회계 세입 관별 조서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b>합 계</b>	161,055,198	154,457,412	6,597,786
100 지방세 수입	24,697,695	24,697,695	0
110 지 방 세	24,697,695	24,697,695	0
200 세 외 수 입	52,358,945	52,358,945	0
210 경상적세외수입	13,165,667	13,165,667	0
220 임시적세외수입	39,193,278	39,193,278	0
500 조 정 교 부 금	62,606,124	56,008,338	6,597,786
510 조 정 교 부 금	62,606,124	56,008,338	6,597,786
600 보 조 금	21,392,434	21,392,434	0
610 국 고 보 조 금	5,023,675	5,023,675	0
620 시 · 도비보조금	16,368,759	16,368,759	0

## 일반회계 세입예산 목별 조서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장	관	항	목			
500				62,606,124	56,008,338	6,597,786
조 정						
교부금				62,606,124	56,008,338	6,597,786
	510					
	조 정					
	교 부 금			62,606,124	56,008,338	6,597,786
		511				
		조 정				
		교 부 금		62,606,124	56,008,338	6,597,786
			511-01			
			조 정			
			교 부 금	62,606,124	56,008,338	6,597,786

##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 세 입 예 산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기집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장	관	항	목				
500 조 정 교부금				62,606,124	56,008,338	6,597,786	
		510 조 교 부 금		62,603,124	56,008,338	6,597,786	
			511 조 교 부 금		62,606,124	56,008,338	6,597,786
			511-01 조 교 부 금	62,606,124	56,008,338	6,597,786	○ 2000 보통교부금 추가분  6,597,786,000원

세 출

## 일반회계 세출 관별조서

(단위:천원)

장 관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합 계	161,055,198	154,457,412	6,597,786
1000 일반 행정 비	82,485,051	82,485,051	0
1100 입법 및 선거관계	1,772,546	1,772,546	0
1200 일반 행정 비	80,712,505	80,712,505	0
2000 사회 개발 비	47,066,649	47,066,649	0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	19,308,697	19,308,697	0
2300 사회 보 장 비	26,808,987	26,808,987	0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948,965	948,965	0
3000 경 제 개 발 비	23,405,869	23,405,869	0
3300국토 자원 보존 개발비	23,135,638	23,135,638	0
3400 교 통 관 리	270,231	270,231	0
4000 민 방 위 비	279,642	279,642	0
4100 민 방 위 관 리	279,642	279,642	0
5000 지 원 및 기 타 경 비	7,817,987	1,220,201	6,597,786
5400 예 비 비	7,817,987	1,220,201	6,597,786

##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조서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5000						7,817,987	1,220,201	6,597,786
지원및기타경비								
	5400					7,817,987	1,220,201	6,597,786
	예비비							
		5410				7,817,987	1,220,201	6,597,786
		예비비						
			400			7,817,987	1,220,201	6,597,786
			예비비등					
			410			7,817,987	1,220,201	6,597,736
			예비비					
				801		7,817,987	1,220,201	6,597,786
				예비비				

##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5400 예비비					7,817,987	1,220,201	6,597,786	
	5410 예비비				7,817,987	1,220,201	6,597,786	
		5411 예비비			7,817,987	1,220,201	6,597,786	
			400 예비비등		7,817,987	1,220,201	6,597,786	
			410 예비비		7,817,987	1,220,201	6,597,786	
				801 예비비	7,817,987	1,220,201	6,597,786	
					7,817,987	1,220,201	6,597,786	○ 예비비 6,597,786,000원

## 명시 이월 사업 조서

## 명시 이월 사업 조서

(단위 천원)

사업명	과목			예산액	이월액	사유
	항	세항	목			
구민회관 건립	계			23,092,600	17,718,238	◎ 마포구민의 복지향상과 2002년 월드컵대회를 전·후하여 각종 문화·체육시설로 활용될 구민회관 건립공사는 3개년의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액중 연말까지 미집행금액과 추가경정 예산액을 명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사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22,540,000	17,373,969	
			감리비	500,400	314,811	
			시설부대비	52,200	29,458	
월드컵 시범화장실 건립	계			240,000	240,000	◎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전, 후하여 공중화장실 시설 및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으로 건립되는 성산2동 월드컵시범화장실의 시보조금중 금년도 미집행액을 명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240,000	240,000	

# 명시 이월 사업 조서

(단위: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항	세 항	목			
장애인복지관 건 립	계			800,000	711,092	◎ 국·시비 지연배정 및 재입찰에 따른 건축설계 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년내 건축공사 발주가 어려워짐에 따라 건축비 및 부대비를 명시이월
	저소득주민	보조사업	시 설 비	760,903	673,192	
			감 리 비	33,232	33,232	
			시설부대비	5,865	4,668	
신수동 91~112 도로개설공사	계			1,000,000	1,000,000	◎ 사업구간과 관련하여 약 10억 상당의 부당이득 금 청구소송이 우리구를 피고로 하여 진행중에 있 는바, 사업의 시행시기 부적합하여 명시이월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 설 비	1,000,000	1,000,000	